

#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2025. 05.



대주·KC

케이디종합건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025-19-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케이디종합건설(이하 “당사” 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사내외주사업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당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대상 사업·사업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 본사
2. 당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
3. 기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의2. “안전사고”란 업무에 기인하여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이 직접·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7.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위험작업”이란 전기작업(전기의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고소작업(높이 2m이상 고소작업), 중량물취급작업, 화기작업(용접작업 등), 밀폐공간작업, 맨홀작업 등 중대재해 또는 화재폭발 등의 재해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0. “도급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2. “당사 시설 이용 국민”이란 당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으로서 업무를 위해 당사를 방문하는 국민 등을 말한다.
13. “안전작업허가”란 전기작업(전기의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고소작업(높이 2m이상 고소작업), 화기작업(용접작업 등),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감독자로부터 작업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 우선)** 직원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은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이사장은 당사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당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과 책임)** ① 제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규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반사항이 이행되도록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인적·물적 안전보건을 도모하고 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당사의 임직원은 본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당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본사 : 대표이사
2. 현장 : 현장소장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분장 및 책임의 한계설정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본사 : 안전총괄팀장
2. 현장 : 현장소장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실행 및 주기적 성과측정
2.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보건주관팀장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주관·안전관리실무자)**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주관팀장을 지정·운영한다.

1. 본사 : 안전총괄팀장
2. 현장 : 현장안전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주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안전보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기본방침 설정, 관리감독자가 작성한 각 부서 계획수립의 취합·검토·조정, 주기적 성과평가 및 필요 시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요구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제반 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및 지침서의 이행여부 감독
4. 안전보건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산재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8.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당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팀장을 본사 운영지원팀장으로 지정·운영한다.

④ 제3항의 안전보건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2.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3.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4.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당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실무자를 지정·운영한다.

⑥ 제5항의 안전관리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주관팀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

2. 당사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및 협조
3.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대표와 근로자위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위원수 만큼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을 지명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이사장(사용자 대표)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총괄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의3(안전경영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안전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인명 및 재산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며, 당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전문가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이사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으로 사업이사, 지원처장 및 검사처장으로 구성한다.

⑤ 근로자위원은 당연직으로 본사 근로자 위원 대표 2명과 연구소 및 수도권남부분부 근로자대표로 구성한다.

⑥ 전문가위원은 안전·보건 등 관련분야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⑦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위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4(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기준 제·개정
2.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연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5.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의5(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 기본원칙)**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팀장은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 및 기록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관리책임자가 주관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실시 결과를 다음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2.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13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 8시간 이상
2. 신규 채용직원 중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3. 현장근로자 중 작업내용 변경 직원 : 2시간 이상
4. 현장근로자 중 작업내용 변경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관리감독자 교육)**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연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 맨홀작업
3. 액화석유가스 등 인화성 가스 발생장치 취급 작업
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5.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작업
6.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②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가.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라.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맨홀작업
  - 가.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다.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라.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가.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나.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다.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나.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다.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라.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작업
- 가.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나.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다.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라.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가.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작업장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현황에 관한 사항
  - 다.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라.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바.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③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교육시간 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등)**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에는 가능한 대표이사, 관리책임자가 참석한다.

③ 안전점검의 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

④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사업장 내 위험 예방을 위해 즉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제보된 유

해·위험요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안전인증)** 관리책임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등)** ① 관리책임자는 당사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②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결함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한다.

1. 제3조제8호에 따른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작업전 관리감독자로 부터 안전작업 허가를 받은 후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
2.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직원의 현장 단독작업 금지
3.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4.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5. 현장 밀착형 안전 강화 조치 마련을 위해 당사 임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내부 제 안제도 실시
6. 각 작업장에 부착된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
7.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8.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22조(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발생위험장소 예방조치, 수급업체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 진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조직, 직무, 역할 및 책임 명시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자격과 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4. 관계 법령,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 및 부적합사항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 내역 감독에 관한 사항
5. 직무특성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당사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위험물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제24조(작업중지 요청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 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 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25조(안전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위해·위험작업을 실시 할 경우 작업장 부근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물체에 직접 도장 가능

**제25조의2(비상조치계획 및 대응훈련)**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5. 주민홍보계획
6.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근로자, 당사 시설이용 국민,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5장 보건관리

**제26조(보건시설)**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완화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시,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소관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 철저히 감독한다.

③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는 당사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3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단,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4조(보건표지·보건수칙 종류 및 게시)**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보건표지 및 보건수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의3(건강유지 및 증진)**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문(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관리책임자는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5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① 당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보건주관팀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안전보건주관팀장은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관계자는 즉시 사고자를 피해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 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현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한다.

1.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2. 재해요인의 파악을 위하여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3.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4. 대책의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5.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공유한다.

**제37조(사고 기록·관리)**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37조의2(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장 위험성평가

**제38조(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을 다

음 각 호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한다.
2. 위험성 결정내역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3.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4.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6.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권한)은 각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7. 위험성평가 일련의 과정은 관리책임자 이하 안전보건 소관팀 총괄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0조(위험성평가 절차)**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3. 3단계(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 4단계(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6.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4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 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42조(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①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제43조(안전보건 문서의 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생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발생 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4.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 보존)
  6.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7. 제20조에 따른 안전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4조(그 밖의 사항)**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5.01.01.)

이 규정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